│ 제1장 생계 지원 │



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

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.

l 맞축형 기초생활보장제도 l

- 🙉 대상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. ② 부양의무자 기준(의료급여에 한함)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*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
 - * '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(1인가구): 생계급여 623,368원, 의료급여 831,157원, 주거급여 976,609원, 교육급여 1,038,946원
 - ※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(배우자 포함)의 소득·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(연소득 1억원, 재산 9억원) 할 경우 보장 불가
-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 -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
🐧 지원예시

-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: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(원 단위 올림)
- 의료급여 일병, 부상,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
〈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〉

구분		1차(의원)	2차(병원)	3차(상급종합병원)	약국	PET 등
1종˚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	없음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	5%
2종**	입원	10%	10%	10%	-	10%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	15%

- * 1종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. 시설수급자
- ** 2종 :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